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점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954
- 제출자 : 문영민의원(외 10인)
- 제출일 : 2017년 8월 9일
- 회부일 : 2017년 8월 10일

### 2. 제안이유

- 현행 건립비용 1억원 이상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준공석, 준공판 등을 통해 건립비용을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개별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표지판 등을 통해 설치비용을 공개토록 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와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법령규정의 체계성을 갖추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 시민들에게 관련 비용을 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다.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 방법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도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가. 조례안의 개정취지 및 필요성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립비용 1억원 이상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준공석, 준공판 등을 통해 건립비용을 공개토록 하는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별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표지판 등을 통해 설치비용을 공개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와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어느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일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써 주로 개정하는 부분의 분량,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바, 본 조례와 같이 정의, 공개원칙, 공개 방법 및 내용 등이 전반적으로 개정되는 경우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나. 표지판 및 설치건립비용 정의(제2조)

- 안 제2조는 “공공시설물”, ‘공공시설’, ‘공공건축물’을 “공공시설물 등”으로 하여 각각의 용어 정의와 함께 기존 ‘준공판 및 준공석’을 ‘표지판’으로 확대하여 용어를 정의하고, ‘건립비용’은 ‘설치비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게 되는 바, 정의 규정을 통해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법적 집행과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다.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제3조)

- 안 제3조 제1항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 시민들이 관련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관련법령(「지방자치법」 제22조)<sup>1)</sup>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함은 그 대상이 ‘일반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표지판 등 시공자가 일반주민의 범주에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인 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하겠음.
- 안 제3조 제2항은 1억원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과 50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설치비용 명기대상을 50만원이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와 50만원이상 설치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황파악 여부 및 적용시점 등을 명확히 하여 조례 적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재무국은 시민들의 알권리보장과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를 고려하여 50만원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며, 현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1)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현재 50만원 이상의 공공시설물의 설치 실태에 대한 파악은 되지 않고 있어 본 개정안 부칙과 같이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그 때부터 설치되는 공공시설물부터 적용하고 추후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안 제3조 제3항은 재물조사 대상물품 및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바, 지나친 공개범위의 확장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개대상의 유형과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와 비공개와 공개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차이점과 실익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논의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라. 공개방법 및 내용 등(제4조)

- 안 제4조는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과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립비용 공개방법 및 공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공개방법 및 내용을 명확히 하여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제4조 제3항에서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에 대한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향후 위치와 규격 및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나 집행지침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부칙조항

- 부칙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시행일(2018년 1월 1일)과 적용례(50만원 이상의 공공시설물(제3조 제2항 제2호)는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거나 교체하는 공공시설물부터 적용)를 규정한 것으로,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및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폐지하는 법제 활동을 통하여 추구하려는 내용은 법령 본칙에서 규정되지만, 그 밖에도 법제도가 변동되는 시점을 분명히 하고 종전의 법률관계에서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나 경과적인 조치 같은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

## [참고자료 1]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전 부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공공시설’ 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li><li>‘공공건축물’ 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li><li>‘준공석’이라 함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li><li>‘준공판’이라 함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li><li>‘건립비용’이라 함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li></ol>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공공시설물 등” 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ol style="list-style-type: none"><li>“공공시설물” 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li><li>“공공시설” 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li><li>“공공건축물” 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li></ol></li><li>“표지판 등” 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li><li>“설치 및 건립비용” 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li></ol>
<p>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서울특별시장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p>

현 행	전 부 개 정 안
	<p>② 공공시설물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li> <li>2. 50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li> </ol>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물조사 대상물품</li> <li>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li> </ol> <p>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p> <p>⑤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p>
<p>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를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하도록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li> <li>2.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사명</li> <li>2. 공사기간</li> <li>3. 발주자 기관의 명칭</li> <li>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li> <li>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li> </ol>	<p>제4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물명</li> <li>2. 설치일시</li> <li>3. 시공업체</li> <li>4. 설치비용</li> <li>5. 관리부서</li> </ol> <p>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사명</li> <li>2. 공사기간</li> <li>3. 발주기관의 명칭</li> <li>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li> </ol>

현 행	전 부 개 정 안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 ·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제5조(유지 · 관리비용 공개) 서울특별시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유지 · 관리비용 공개) ① 서울특별시장은 제3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 및 대체하는 경우 그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 제5096호, 2011.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설물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공공시설물부터 적용한다.